

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 - 3호

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· 고시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·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3일

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

학교(유치원)명	위 치	보호구역 면적(m ²)		비 고
		절대구역	상대구역	
전주조춘초등학교	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72-1	절대구역	27,859.13	기존 설정된 보호구역 중 출입문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
		상대구역	229,165.88	
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가.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

나. 상대보호구역 :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※ 단,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

※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

3.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: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

4.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

(인터넷 주소 : <https://cuz.schoolkeepa.or.kr>-지도찾기에서 확인)

5. 고시기간: 고시일로 부터 20일간

6. 참고사항: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(063-270-6103)에게 문의 바람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